

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(타시·도 영업) 관련 안내

□ 관련근거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(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)

□ 사업구역 외 영업 제한적 허용

-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
-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

□ 타시·도 영업 위반 사례

1. 빈차인 상태로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승객(가족 및 지인포함)을 태우고 오는 행위
 2. 승객의 위치가 귀로하는 도로변이 아닌 귀로방향 경로를 벗어나 별도로 승객의 위치까지 이동하여 승객을 태우러 거꾸로 운행하여야 한다든지, 도로를 크게 벗어나 우회 하여야만 해당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경우(호출포함)
 3. 사업구역 밖의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다 태우고 오는 행위
 4. 사업구역 밖에서 인천으로 귀로 할 때 인천 이외 다른 지역을 경유하여 돌아오는 경우
 5. 자신의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사업구역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후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정차(5분 이상)하여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
 6. 시외에서 강화로 가는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
- ☞ 강화군은 별도사업구역으로 인천에서 강화군으로 운행 시 사업구역 외 영업에 해당

□ 사업구역 외 영업운행 시 유의할 점

1.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 승객을 하차 시킨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와야 함
 2. 부득이한 사정(용변, 식사 등)이 발생하여 5분(정차)이 경과한 때에는 이후 승객의 탑승요구가 있다하더라도 타 사업구역 택시이용을 안내하고 빈차로 되돌아와야 함
 3. 사업구역 밖에서 귀로영업을 하던 중 승객이 목적지를 변경하여 하차지점이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(사업구역 밖) 경우 목적지 변경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 필요
 4. 인천지역에서 출발 후 시외로 이동 시 여러 행정구역을 경유할 경우 인천시 최종 경계지점에서 할증을 적용함(예시 : 인천문학 IC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동할 경우)
- ☞ 인천시 → 부천시(송내IC-중동IC) → 인천시(서운JC-계양IC-노오지JC) → 김포시(김포TG근처) → 고양시 순으로 이동을 한다면, 이때 할증 적용 시점을 1차 시외구역 구간인 부천시가 아닌, 인천시 최종 시 경계인 김포시(김포TG근처)임